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

(박완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454
----------	-------

발의연월일 : 2018. 11. 8.

발의자 : 박완주 · 박정 · 심기준

우원식 · 심재권 · 위성곤

김정우 · 박찬대 · 김상희

백혜련 · 유동수 · 권미혁

서영교 · 맹성규 · 김영호

손금주 · 노웅래 · 금태섭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구제역 등의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는 가축 등에 대하여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 · 돼지에 비해 사육기간이 짧은 닭 · 오리 등 가금류는 사육현황 파악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방역관리 및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가금농장의 입식 사전 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질병 확정 판정 이후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가능하여 초기 방역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중점방역관리지구내의 가축사육제한명령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 · 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금농장에 대한 가금류 입식

사전 신고제 도입과 가축전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일시 이동 중지명령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5항, 제15조의2, 제17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및 제60조제1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5항 중 “시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① 닭, 오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해당 가축을 농장에 입식(入殖)하기 전에 가축의 종류, 마리 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축의 소유자등은 가축의 입식 전에 제17조의6에 따른 방역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방법과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에”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중 “식용란의”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자 및 식용란의”로 한다.

제17조의6제1항제4호 중 “입식(入殖) 및”을 “입식 및”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를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으로 한다.

제60조 제1항 제4호의2를 제4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입식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을 입식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의4(중점방역관리지구) ①</p> <p>~ ④ (생 략)</p> <p>⑤ <u>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해당 가축의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다.</u></p> <p>⑥ · ⑦ (생 략)</p> <p><u><신 설></u></p>	<p>제3조의4(중점방역관리지구) ①</p> <p>~ ④ (현행과 같음)</p> <p>⑤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u></p> <p>-----</p> <p>-----</p> <p>-----</p> <p>-----</p> <p>-----.</p> <p>⑥ · ⑦ (현행과 같음)</p> <p><u>제15조의2(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① 닭, 오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해당 가축을 농장에 입식(入殖)하기 전에 가축의 종류, 마리 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축의 소유자등은 가축의 입식 전에 제17조의6에 따른 방역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방법과</u></p>

	<p><u>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p>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생 략) 2.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2의2. <u>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u> 3. ~ 6. (생 략) ② ~ ⑦ (생 략)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 ----- ----- ----- ----- ----- -----. 1. (현행과 같음) 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 -- 2의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자 및 식용란의-----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역기준을 준수하	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① - ----- ----- ----- ----- ----- ----- -----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0조(과태료) ①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u>4의2.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u> <u>입식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u> <u>하고 가축을 입식한 자</u>
<u>4의2. (생 략)</u>	<u>4의3. (현행 제4호의2와 같음)</u>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